

S&P500 기업의 기후변화정보 공개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시지침을 2010년 발표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2011년부터 사업보고서(10-K)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
- ▶ Ceres가 2014년 초에 발표한 S&P500 기업들의 기후변화정보 공개 지침 이행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기업들이 10-K에 공시한 기후변화정보의 수준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수준이 높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정보 공시지침

- Regulation S-K는 미국의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이하 10-K)에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상장기업들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비재무적 정보 범위는 크게 ① 사업에 대한 설명, ② 진행 중인 소송, ③ 위험 요소, ④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자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참조)
 - Regulation S-K 101조는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의 종류, 조직의 형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 고객층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고 Regulation S-K 103조는 현재 기업이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해 다루고 있음
 - Regulation S-K 303조는 기업 활동에 관한 경영자의 의견 서술(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Regulation S-K 503조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런 위험들은 ① 생산이력 상 미기재사항 ② 최근연도 수익사업 중 누락분 ③ 재무상태 ④ 사업 그 자체 등에 존재함

〈표 1〉 Regulation S-K에 따른 10-K 상 비재무적 정보 공시 내용¹⁾

순번	10-K 상 비재무적 정보		Regulation S-K
	공시 위치	주요 내용	
1	사업에 대한 설명	해당 기업 및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조직,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 고객군 등에 대한 기술	101조
2	진행 중인 소송	해당 기업 및 자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한 기술	103조
3	위험 요소	해당 기업(또는 사업)이 보유한 특정 위험과 그 위험이 기업(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	503조
4	경영자의 의견 및 분석	경영진 관점의 재무제표 해설 및 기업의 유통성, 자본, 운영성과 등에 대한 기술	303조

- SEC는 2010년 2월 8일 국내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10-K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시 지침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이하 기후변화정보 공시지침)’를 발표했다
- SEC의 기후변화정보 공시지침은 Regulation S-K에서 요구하는 환경정보보다 더욱 해당기업의 기후변화위험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공시 내용으로써 4가지 항목을 제시함 (〈표 2〉 참조)
- 해당 지침은 10-K의 사업에 대한 설명영역에서 현존하는 법령, 국제협약, 그리고 업종 트렌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위험요소영역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률, 기술 등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험, 그리고 기후변화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물리적인 위험 등을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Regulation S-K 101조 C항에 따르면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기업의 수익, 지출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환경설비를 구축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공시해야하고, Regulation S-K 103조는 연방정부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Regulation S-K 303조는 기후변화에 대한 법률이 기업의 재무상태 혹은 생산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Regulation S-K 503조 C항은 현존하거나 입법이 예고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새로운 기회 및 위험)에 대해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 SEC, 2010,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Release Nos.33-9106; 34-61469; FR-82

〈표 2〉 SEC의 기후변화정보 공시지침에 따른 환경정보 공시 내용²⁾

순번	항목	공시 내용	공시위치	예시
1	법과 규제가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존 법령 또는 입법 대기 중인 법령(이하 기후변화법률)과 이들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Regulation S-K 503조 C항) 기후변화법률의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성 평가 (Regulation S-K 303조) 	사업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배출권 거래 손익 탄소배출저감설비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법을 입법여부에 따른 매출변동
2	국제 협약이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관련 국제조약 체결에 따라 입법이 예정된 법률, 규제들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Regulation S-K 503조 C항) 해당 국제조약의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성 평가 (Regulation S-K 303조) 	사업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탄소저감설비투자 EU ETS 참여에 따른 탄소배출권 관련 손익
3	규제/업종 트렌드가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정치적, 과학적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사업기회 및 위험요소 (Regulation S-K 503조 C항) 환경정보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 	위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제품의 수요 증가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수요 감소 제품 내 탄소발생량 개선 및 혁신 대체에너지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규제 또는 트렌트 (Regulation S-K 101조) 	사업에 대한 설명	
4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가 해당 기업의 영업·생산 활동에 미치는 물리적인 영향 	위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대 공장 피해 기상이변에 의한 수급조절 실패

S&P500 기업의 기후변화정보 공개현황

- Ceres는 2014년 2월 「Cool Response : The SEC & Corporate Climate Change Reporting」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S&P500 기업들의 10-K에 대한 환경정보공시현황을 공개함
 - Ceres의 보고서는 ① SEC의 기후변화지침에 따라 기업들이 10-K 상에 공시한 환경정보의 수준과 ② SEC가 발송한 기후변화정보 공시에 관한 의견서(comment letter)의 내용과 그에 대한 기업의 응답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S&P500 기업들의 기후변화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활동을 다룸
- 10-K에 기후변화정보를 공시하는 S&P500 기업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공시점수는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공시되는 데이터의 양에 비하여 공시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고 있음 (그림 1) 참조)
 - Ceres는 S&P500 기업들의 환경정보 공시점수를 모범사례인 AES Corporation의 2009년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AES의 공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른 기업들의 공시정보를 표준화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음³⁾
 - AES는 1981년 텍사스에 설립된 전력회사로, 현재 전 세계 21개국에 발전설비를 갖추고 화석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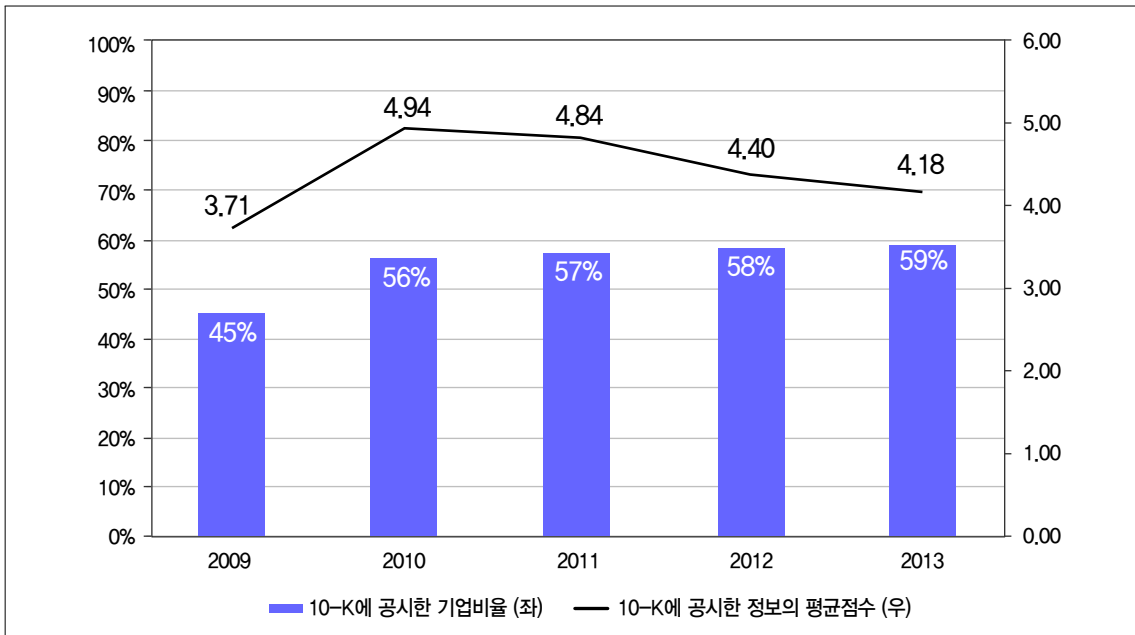
2) 앞의 책 (각주 1), 내용 자체 분류

3) Ceres 자체적인 모형을 통하여 점수를 표준화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점수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료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간 37,761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임(2013년 Fortune500기업 중 153위)

- Chevron의 2012년과 2013년 10-K 내 기후변화관련 정보의 공시 분량은 2011년의 절반수준이었고, 2011년에는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규제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법(California's Global Warming Solutions Act)이 Chevron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한 반면 2012년에는 간략한 소개가 전부였음

[그림 1] 과거 5년간 S&P500 기업 환경정보공시현황(10-K)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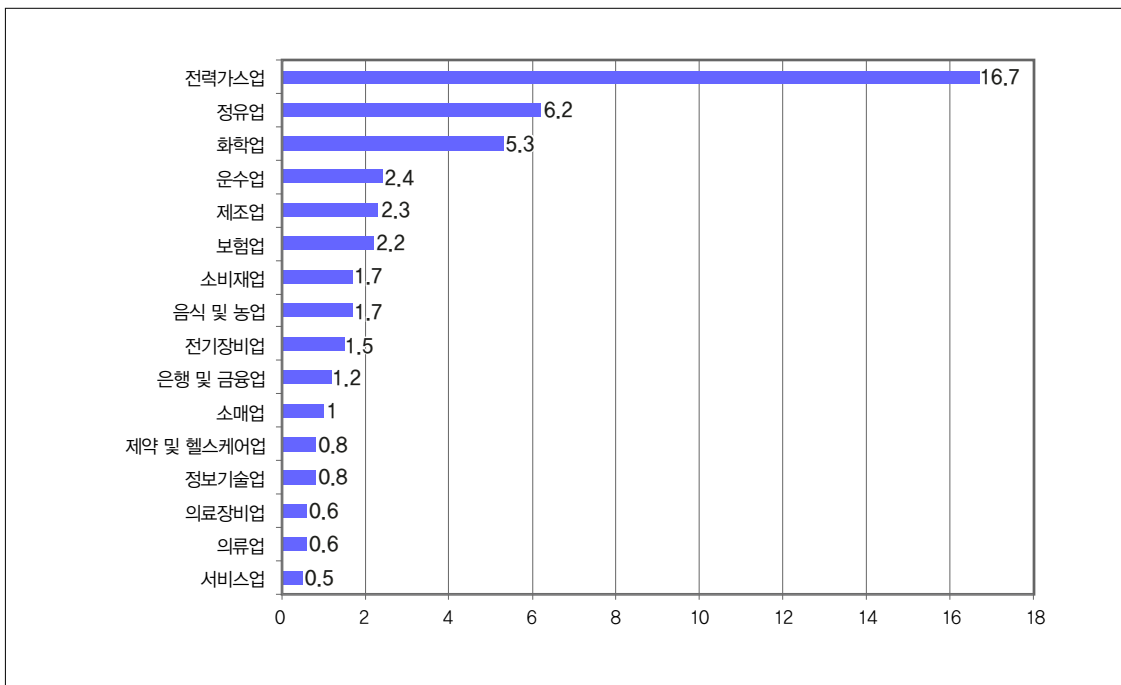


- Ceres는 산업별 기후변화정보 공시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500 기업을 25개 업종으로 구분한 뒤 해당 업종별 평균 공시점수를 공개함
 - 업종은 ① 온실가스 배출 수준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영향정도, ② 기후변화가 기업운영에 가져올 물리적인 영향 및 위험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Ceres가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K를 통해 기후변화정보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을 비교하였는데(〈표 3〉 참조), 주요 업종은 전력가스업, 화학업, 정유업, 그리고 광업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으로 전력가스업과 화학업을 영위하는 S&P 500기업들은 모두 10-K에 기후변화정보를 공시하고 있었고 10-K 공시점수는 전력가스업이 평균 16.7점, 화학업이 평균 5.3점을

4) 앞의 책 (각주 1), 내용 자체 분류

기록함

- 정유업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화학업에 비해 낮은 공시참여율(97%)을 보였으나 공시점수는 화학업보다 높은 평균 6.2점을 기록함
- 반면 10-K 공시에 소극적인 업종도 있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제약/헬스케어업의 경우 10-K 상 공시기업비율은 23%, 공시점수는 0.8점으로 나타남

[그림 2] 2012년 S&P500 기업의 업종별 기후변화정보 공시 점수⁵⁾

5) Ceres, 2014, 「Cool Response : The SEC & Corporate Climate Change Reporting」

〈표 3〉 과거 4년간 S&P500 기업의 산업별 기후변화정보공개비율⁶⁾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기업수	10-K	기업수	10-K	기업수	10-K	기업수	10-K
항공 및 국방업	9	56%	9	44%	9	44%	8	50%
의류업	10	50%	11	55%	11	73%	11	73%
은행 및 금융업	56	30%	56	34%	54	33%	54	33%
화학업	11	91%	11	100%	12	100%	13	100%
소비재업	27	52%	27	56%	26	54%	26	58%
전력가스업	40	100%	41	100%	39	100%	35	100%
전기장비업	31	39%	31	39%	29	38%	26	42%
음식 및 농업	31	81%	29	79%	31	77%	29	72%
숙박업	4	75%	4	75%	4	75%	4	75%
제조업	41	68%	41	66%	41	63%	42	64%
정보기술업	38	34%	38	32%	37	32%	36	36%
보험업	26	54%	28	57%	28	57%	28	57%
미디어	8	38%	9	44%	9	44%	9	44%
의료장비업	16	31%	15	33%	17	29%	17	41%
광업	4	100%	4	100%	5	100%	5	100%
정유업	32	97%	32	97%	34	97%	36	97%
제약 및 헬스케어업	28	18%	27	26%	26	23%	25	24%
부동산 금융/개발업	6	83%	6	83%	6	100%	6	100%
소매업	23	78%	23	70%	24	71%	25	68%
서비스업	20	25%	21	29%	21	33%	22	36%
통신업	10	30%	10	30%	9	33%	10	30%
운수업	11	55%	10	70%	10	70%	10	70%
폐기물관리업	2	50%	2	50%	2	50%	3	33%
도매업	7	43%	7	57%	8	63%	8	75%
합계 ^{*1}	491		492		492		488	

^{*1} 본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S&P500 기업 중에서 10-K에 기후변화정보를 공시한 기업의 숫자를 나타냄. 따라서 사업보고서 공시규정(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 보고)에 따라 차기연도 3월까지 보고한 경우, 해당 내용은 차기연도의 공시내용으로 인정됨

6) 앞의 책 (각주 5), p.97 (Appendix 1)